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2720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오세희 · 허종식 · 강준현  
안태준 · 박선원 · 박희승  
이훈기 · 이재관 · 박용갑  
위성곤 · 윤종균 · 이연희  
이광희 · 채현일 · 임호선  
이강일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적용이 국내 전자상거래에 한정하여 한계가 존재함.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사업자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한 상황임. 또한, 소비자 행태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 제공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현상도 발생함.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행태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소비자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지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마.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 온라인판매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소비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또는 맞춤형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4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11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자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 모바일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소비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이하 “소비자 행태정보”라고 한다)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수집한 소비자 행태정보를 활용한 광고(이하 “맞춤형 광고”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소비자 행태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 법에 따른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및 피해예방·구제업무
2. 제39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료·물건·문서 등의 제출·보고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사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표시, 업무내용 및 업무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고시할 수 있다.

⑤ 국내대리인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온라인판매사업자에게 매출액,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2조의2,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p>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②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 <p><u>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u></p> <p><u>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u></p> <p>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사업자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 모바일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소비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정보(이하 “소비자 행태정보”라고 한다)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u>④ 사업자는 수집한 소비자 행태정보를 활용한 광고(이하 “맞춤형 광고”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u></p> <p><u>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u></p> |

<신 설>

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소비자 행태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 법에 따른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및 피해예방·구제 업무

2. 제39조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료·물건·문서 등의 제출·보고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사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표시, 업무내용 및 업무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고시할 수 있다.

⑤ 국내대리인이 이 법을 위반

|                                                                                                               |                                                                                                                                                                                                                                                                                                                         |
|---------------------------------------------------------------------------------------------------------------|-------------------------------------------------------------------------------------------------------------------------------------------------------------------------------------------------------------------------------------------------------------------------------------------------------------------------|
|                                                                                                               | <p><u>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u></p> <p><u>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온라인판매사업자에게 매출액,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u>⑦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br>-----<br>-----<br>-----<br>-----<br>-----<br>-----.                                                                                                                                                                                                                                             |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1. -----                                                                                                                                                                                                                                                                                                                |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3. (생략)

②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 설>

## <신 설>

제22조의  
2, 제23조 제2항

###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  
비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  
비자에게 맞춤형 광고임을 고  
지하지 아니한 자

|                    |                                                                  |
|--------------------|------------------------------------------------------------------|
| <u>&lt;신 설&gt;</u> | <u>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u><br><u>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u><br><u>한 자</u> |
| <u>&lt;신 설&gt;</u> | <u>4.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u><br><u>영업을 계속한 자</u>                    |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